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56호

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정정 고시

1. 중구고시 제2017-53호(2017.7.12.)로 고시한 『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(경미한) 지정 고시』 내용 중 착오 기재사항이 있어,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.
2.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3396-5723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7월 26일

서울특별시중구청장

1. 정정개요

가. 정정요지

- ‘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’ 내용 중 ‘3) 공공시설(공공청사) 조성계획’에서 설치비용 정정

나. 정정내용

구 분	정 정 전	정 정 후	비 고
설치비용	7,820,400,000원	5,256,720,000원	

다. 정정사유

- 착오 기재